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474
------	-----

2023.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종환 의원(찬성자 31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종환 의원)

### 1.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범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2조의2).
- 나.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지원 내용을 제1장 총칙에 신설함(안 제4조의2).
- 다.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
- 라. 공공도서관에 “그 밖의 공공도서관” 으로 명시함(안 제28조제3호).
- 마.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 바. 시장의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함(안 제32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도서관법」 관련 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도서관의 정책환경 변화와 도서관 운영과 발전에 책임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독서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서울시 도서관 현황

- 서울시가 작성·관리하는 각종 도서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종류에 따른 도서관의 분류 및 정의가 법적 의미와는 매우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내부 문서 간에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찾기 어려움.

###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

(단위: 개소)

공공도서관				
소계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기타
1,338	1,126	10	202	

※ 서울도서관 <서울시 도서관 현황> ('22.6.30.기준)

※ 현 통계상 어린이도서관이 특정 유형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공도서관과 분류되어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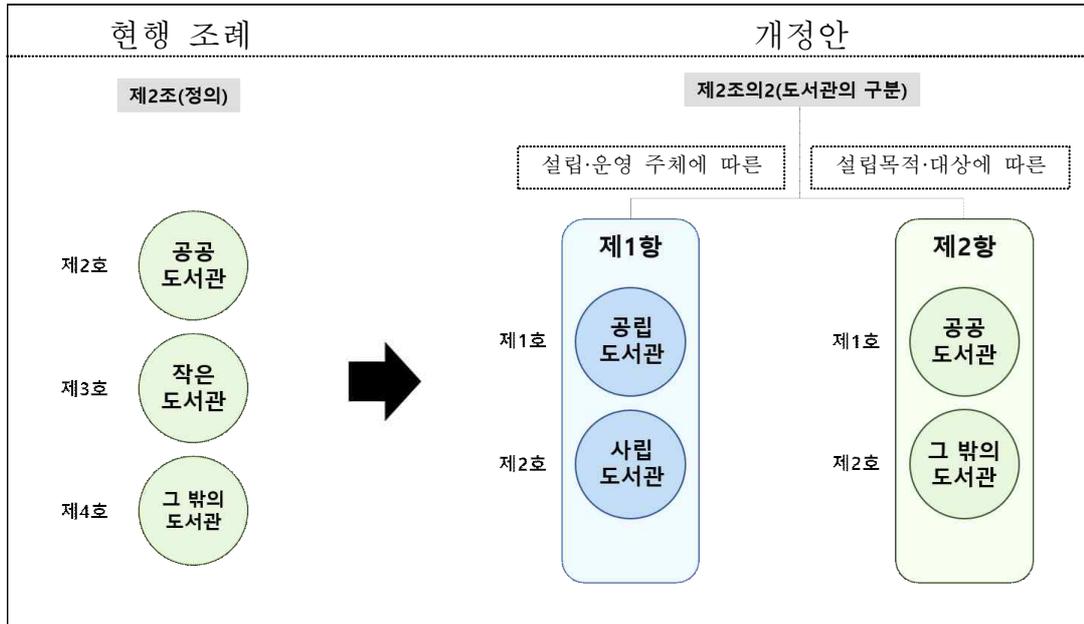
- 법령의 기준에 따른 공공도서관 현황(2022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 및 내부 업무 자료는 작은도서관과 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하여 집계하거나, 사립 공공도서관을 계상하지 않아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을 200곳 이내로 추산하는 등 통계적 불일치가 상존해왔음.

## 다. 조문별 주요 내용

### (1) 도서관의 구분(안 제2조의2 관련)

- 개정안은 관련 법령(「도서관법」 제3조와 제4조)과 같이 도서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 《 도서관의 구분 체계 》



※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대상 도서관 포함

※ 그 밖의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병원·병영·교정시설)

으로 구분하고, 설립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그 밖의 도서관(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개정안은 정의 규정을 통해 도서관 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 지식정보취약계층 등 시장의 책무 강화(안 제4조의2)

- 개정안은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로 도서관 지원 시책·수립, 도서관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재난이재민과 감염병 격리 대상자의 도서구입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서울 시장의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서울시의 주요 추진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 시정 방향과 부합하고, 재난이재민이나 감염병 격리 대상자에 대해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구매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서울시의 의무이자 책무로 규정되고 있어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

### (3)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제2항~제4항)

- 개정안에서 시장은 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류시켜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 「도서관법 시행령」 ('22.12.8. 시행) 》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이는 법(제1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합당한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대통령 소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는 그 위상은 높겠지만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는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 보고 체계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개선 요청할 필요성이 있음.

#### (4) 공공도서관의 구분(안 제28조제3호)

- 개정안(제28조제3호)은 ‘공공도서관’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사항임.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생략) 1.2. (생략) 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공공도서관과----- -----.

-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범주 내에 포함된 개념임.

《 「도서관법」 (2022.12.8. 시행) 》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따라서 현행과 같이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문구는 부적절한 표현이 됨.
- 관련 법령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작은 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변경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작은도서관 진흥법」 ('22.12.8. 시행) 》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 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의무 신설 등(안 제30조의2)

- 개정안은 공립 공공도서관 등록(법 제36조), 등록된 도서관에 대한 운영 평가(법 제37조),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도서관 설립자에게 사서·시설요건·도서관 자료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가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관청으로서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의무화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내 도서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도서관법」은 국가 및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하여 특정 도서관의 종류를 관리·감독하도록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관청으로서 해당 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행정제재 등 각종 권한과 책임을 수반하게 되었음.
- 그러나, 법 개정 시점(2021.12.7.)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시행일인 2022년 12월 8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서울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등록을 위한 방침 수립 등 제반 행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므로 서울시의 법령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하고 신속한 행정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개정안의 발의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법 시행 전에 설립되었던 공공도서관이라 하더라도 향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므로, 사서·도서관자료·시설 등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등록제 의무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분담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6)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안 제32조)

- 개정안은 관련법령(법 제27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도서관 자료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이 운영평가 결과를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운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방침에서 제시된 지표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책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 해도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됨.

## 라. 종합 의견

-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도서관 지원 시책 마련, 사서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 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식정보문화 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또한, 서울시에 부여된 일련의 책임과 권한을 원칙에 맞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편의 제공, 도서관의 구분 체계 등 각종 도서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7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종환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환희,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이효원,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 1. 제안이유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범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및 개념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2조의2).
- 나.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지원 내용을 제1장 총칙에 신설함(안 제4조의2)
- 다.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신설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4항).
- 라.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므로, 작은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 명시함(안 제28조제3호).
- 마.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 등 관리의무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바. 시장의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및 평가 계획수립 의무를 명시함(안 제 3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호의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마목(현행 라목)의 “노인”을 “사람”으로 한다.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독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호 중 “공공도서관”을 “그 밖의 공공도서관과”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운영정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을“(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공공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작은도서관”을“학교도서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평가하고”를“매년 평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p> <p>3. "작은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제1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을 말한다.</p> <p>4.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정의를 따른다.</p> <p>5. (생 략)</p> <p>6. (생 략)</p> <p>가. ~ 다. (생 략)</p> <p>&lt;신 설&gt;</p> <p>라. 65세 이상의 노인</p> <p>마.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p> <p>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2. (현행 제5호와 같음)</p> <p>3. (현행 제6호와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p> <p>마. ----- 사람</p> <p>바. -----</p> <p>사. -----</p> <p>-----</p>

<신 설>

제2조의2(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사립 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아래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그 밖의 도서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를 따른다.

<신 설>

제4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 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 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  
-----  
수립하고 이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1. ~ 4.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④ 시장은 다음 연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 시 제3항의 추진실적에 대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생략)

1.2. (생략)

3.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제28조(작은도서관의 진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공공도서관과 -----.

제30조의2(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기관 및 자치구(이하 “설립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설립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요구·운영정지 명령

제31조(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지원)

① ----- 공공도서관  
-----  
-----  
---

② ----- 학교도서관  
-----  
-----

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① -----  
-----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제33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지식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자료  
제작·구입, 시설개선, 기기구입  
등을 위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학교도서관의 지원) 시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40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진흥)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  
(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  
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  
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